



준법 추심교육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

2020 . 8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Contents

| 제1장 | 개요

- 010 1. 제정 목적
- 010 2. 용어 정의
- 011 3. 성격
- 011 4. 적용 범위 및 방법
- 012 5. 채무자의 책무
- 012 6. 유의사항

| 제2장 | 대부업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013 1. 종사자에 대한 관리
 - 013 가) 추심직원의 자격
 - 014 나) 추심직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 014 2. 내부적 준수사항
 - 014 가) 대부업자 준수사항
 - 015 나) 대부업자 추심직원 등의 준수사항
 - 015 다) 신용정보 등의 보호

| 제3장 |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 017 1. 채권추심 전(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추심 금지)

020 2. 채권추심 단계

- 020 가) 채무자 소재 파악
 - 020 (1) 일반원칙
 - 020 (2) 소재파악의 방법
- 021 나) 채무자 재산조사
- 021 다) 채무변제 촉구
- 024 라) 채무변제 시 유체동산 압류 제한
- 025 마) 채무자 대리인 제도
- 025 바) 채권추심관련 금지 행위
 - 025 (1) 관련 법령 내용
 - 026 (2)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037 3.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민원 처리)

- 038 [붙임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동의서
- 039 [붙임 2] 준법서약서
- 040 [붙임 3] 채권매각통지서 표준안
- 041 [붙임 4] 변제 독촉장 표준안(예시)
- 042 [붙임 5]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예시)
- 043 [붙임 6]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 044 [붙임 7]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048 [붙임 8]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채무자 유의사항

| 제1장 | 양벌규정

- 054 1. 의의
- 054 2. 관련 법률

| 제2장 | 개별법률(양벌규정)

- 055 1. 채권추심법
 - 055 가) 양벌규정(제16조)
 - 055 나) 벌칙조항(제15조)
 - 055 (1) 5천만원 이하 벌금
 - 055 (2) 3천만원 이하 벌금
 - 056 (3) 1천만원 이하 벌금
- 057 2. 신용정보법
 - 057 가) 양벌규정(제51조)
 - 057 나) 벌칙 조항(제50조)
 - 057 (1) 1억원 이하 벌금
 - 057 (2) 5천만원 이하 벌금
 - 059 (3) 3천만원 이하 벌금
 - 059 (4) 1천만원 이하 벌금
- 060 3. 개인정보보호법
 - 060 가) 양벌규정(제74조)
 - 061 나) 벌칙조항(제70~73조)
 - 061 (1) 1억원 이하 벌금
 - 061 (2) 5천만원 이하 벌금
 - 062 (3) 3천만원 이하 벌금
 - 062 (4) 2천만원 이하 벌금

- 063 4. 대부업법
- 063 가) 양벌규정(제20조)
- 063 나) 벌칙조항(제19조)
- 063 (1) 5천만원 이하 벌금
- 063 (2)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장 | 손해배상책임

- 064 1. 의의
- 064 2. 관련 법률

| 제4장 | 개별법률(손해배상책임)

- 066 1. 채권추심법 (손해배상의 책임)제14조
- 067 2. 신용정보법
- 067 가) 손해배상의 책임(제43조)
- 067 (1) 제43조 제1항
- 067 (2) 제43조 제2항
- 067 (3) 제43조 제3항
- 068 (4) 제43조 제4항
- 068 (5) 제43조 제5항
- 068 (6) 제43조 제6항
- 068 (7) 제43조 제7항
- 068 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43조의2)
- 068 (1) 제43조의2 제1항
- 069 (2) 제43조의2 제2항
- 069 다) 손해배상의 보장(제43조의3)

- 069 3. 개인정보보호법
- 069 가) 손해배상책임(제39조)
- 069 (1) 제39조 제1항
- 069 (2) 제39조 제3항
- 069 (3) 제39조 제4항
- 070 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39조의2)
- 070 (1) 제39조의2 제1항
- 070 (2) 제39조의2 제2항
- 070 (3) 제39조의2 제3항
- 071 4. 대부업법
- 071 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제11조의4)
- 071 (1) 제11조의4 제1항
- 071 (2) 제11조4 제2항

- 074 1.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 · 위계 ·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075 2.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077 3. 채무확인서의 교부
- 078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078 5. 거짓 표시의 금지 등
- 079 6. 불공정한 행위의 채권추심 금지
- 081 7.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082 8.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083 9.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부록1 |

- 086 ■ 개별조항 비교
- 086 1. 양벌규정
- 095 2. 손해배상책임 규정

| 부록2 | 최근 개정 대부업법

- 100 ■ 최근 개정 대부업법
- 100 1. [법률 제14820호] 2017.04.18. 공포
- 100 (1) 2017.10.19. 시행
- 104 2. [법률 제14839호] 2017.07.26. 공포
- 104 (2) 2017.07.26. 시행
- 106 3.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공포
- 106 (3) 2018. 12. 24. 시행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 시행일 : 2019. 6. 25.)
- 108 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108 (4) 2020. 8. 5 시행

| 부록3 |

- 110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전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1장 개요

1. 제정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서울시청)에서 제시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등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규율함으로써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대부업자”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대부채권매입추심)하

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대부업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 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채권추심법」제2제2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채권추심법」제2조3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채권추심법」제2조제4호)
- “추심직원”란 협회 정회원사 소속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성 격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규제운영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협회 정회원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부당행위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4. 적용 범위 및 방법

- 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서(이하 ‘동의서’)”에 동의한 대부업자에 적용된다. 다만, 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닐지라도 대부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서(예시) : (붙임1)

5. 채무자의 책무

-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다.
- 그러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보증인 제외)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대부업자가 적법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반드시 관련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의 제재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행위의 범위만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제2장 대부업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가. 추심직원의 자격

- 대부업자는 추심직원을 채용(또는 계약)함에 있어 대부업법 제9조의 5(고용 제한 등)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관련조문 : 대부업법 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
 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추심직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 대부업자는 추심직원을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반기 1회) 또는 수시로 기존 추심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예 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부업자는 필요 시 소속 협회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내부적 준수사항

가. 대부업자 준수사항

- 대부업자는 추심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 정 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추심직원과 계약 체결 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추심직원이 이 서약 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준법서약서(예시) : (붙임 2) 참조

나. 대부업자 추심직원 등의 준수사항

- 추심직원 등은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는 한편, 사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채무자 등 추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추심직원 등은 소속 회사의 명의를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추심직원 등은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신용정보 등의 보호

- 대부업자는 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및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등을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심완료 시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대부업자는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채무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추심직원 등이 로그인 및 책임자 승인을 거쳐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횟수 내에서 조회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추심직원 등이 자신의 담당 채권에 한하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정보를 PC로 Download하거나 화면 Capture 또는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 · 준수사항

1. 채권추심 전(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추심 금지)

- 대부업자는 대출채권의 양도 · 양수 시 신용구제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채권 등) 등 채권추심 제한요건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채권양도 시 거래상대방이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채권 양도가 허용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제2조제4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 대부업자는 채권양도 시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예 시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3.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4. 기타 채권 ·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예 : 원인서류 부존재,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채권, 채권 · 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 대부업자는 채권양도 후 채무자와 분쟁이 있거나 분쟁가능성이 높은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 매각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양수도 계약 시 준수사항

■ 대부업자는 채권양수도 시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등에 따라 추심을 금지하고 있는 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채권인지 여부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추심을 금지하고 있는 채권인지 여부 등을 거래자간 상호 확인하여 정상적인채권의 양수도를 통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권양수도 시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채권 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가 이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매각대상 채권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권양도 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철저히 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의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통지서 표준안 : 〈붙임3〉 참조

- 대부업자는 채권양도 시 거래상대방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를 동의한 대부업자에 양도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시스템에 채권양수도 내역을 등록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변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 제 13조제1항 및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지원 여부 확정시까지)
 2.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4.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0조제1항 및 제593조제1항)
 5.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6.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8.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권추심 단계

가. 채무자 소재 파악

(1) 일반원칙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 채권추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
-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
 - 대부업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2항)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연락처
 - 채권자의 성명·명칭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2) 소재파악의 방법

- 추심직원은 채권추심 시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면담 또는 탐문의 방법으로 소재파악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추심직원은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10조)
 - 추심직원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행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소속 임직원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대부업법』 제10조의2)
- 대부업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신청·취득하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재산조사

- 대부업자는 재산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15) 아울러,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무변제 촉구

- 대부업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 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 발생 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및 시점 등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충분

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없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 등으로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직접 발급한 동 채무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대부업자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
- 대부업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와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방문 시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언행과 복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협회 권고 기준 〉

- ◆방문추심 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시간, 장소 고지
- ◆고지방법 : 전화, SMS, 우편 등

- 전화를 이용하여 변제촉구를 하는 경우, 전화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장, 협조문 등 서면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붙임4>에 따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서식, 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붙임5>의 문구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외의 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투 겉면에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추심직원 등이 임의로 서식,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 변제 독촉장 표준안 (예시) : (붙임4) 참조

※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 (예시) : (붙임5) 참조

-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는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 및 <붙임5~7>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붙임6) 참조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붙임7) 참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붙임8)참조

※ 대부업자는 각사의 상황에 따라 붙임의 양식을 적의조정 가능

〈 협회 권고 기준 〉

◆사전 변제 요구 불가. 다만, 변제 방법 안내 가능

-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회사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 법원·검찰·경찰 소속 직원 등으로 가장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부업자(추심직원)는 변제촉구 등을 위한 서면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우편(E-mail)이나 이동전화의 문자서비스를 통해 변제를 촉구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알려진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파악한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또는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채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채무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후 채무변제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정보 또는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한다.

라. 채무변제 시 유체동산 압류 제한

- 대부업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압류 가능한 최저 채무액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
 -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연체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이들 노약자들이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I. 운영원칙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

II. 운영방안칙

①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 「민사집행법」제195조3호에 따른 1개월간의 생계비(185만원)

* 가이드라인 상 채무원금잔액 기준 : 100만원 이하

②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

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③ (집행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연체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이들 노약자들이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마. 채무자 대리인 제도

-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시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바. 채권추심관련 금지 행위

(1) 관련 법령 내용

-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9, §11, §12)

법조항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채권추심법』 §9 (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제7호)

「채권추심법」 §11 (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
「채권추심법」 §12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 염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2)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 대부업자(추심직원)는 채권추심 수행 시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통상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래의 금지사항 중 단순히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일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금지행위 세부내용에 대한 예시중 < > 내의 미·영·호·일·홍은 해당 항목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일본·홍콩의 관련 법률 또는 감독당국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①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9 i)

☞ 위반시 제재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 폭행이란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 사례〉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미·호>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호>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 사례〉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영·호>
-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호>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호>
- ◆독촉장 발송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호>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사례 〉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 감금이란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하고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사례 〉

- ◆사무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는 행위
-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不知)를 일으키도록 계락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사례 〉

-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미·영·홍>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언급하는 행위<미·영·호>
 - * 채무자의 관계인(특히, 친족)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해 이유 없다고 언급하는 행위<미·영·호·일>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대상,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그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미·영·호>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이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미·영·호>
-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도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영>
-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호>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

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호>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미>

- 위력의 사용이란 채무자 의사에 자유를 제약·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힘의 사용에는 유형력·무형력을 불문하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관련 사례〉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의사에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일>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영·호>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자리를 뜨려하자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호>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채권추심법」 §9 ii)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관련 사례〉

-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영·호·일>
 - * 방문 허용횟수 : 주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급
-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영·호>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영·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 또는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는 행위
 -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319②)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9 iii)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 대법원 판례(2004도8447)

대부업자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48일간 460여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

〈 관련 사례 〉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미·영·호·일·홍)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미)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도 전에 연락을 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영·호)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내는 행위
 - － 전화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독촉 허용횟수 : 채권별 일정횟수(1일 2회) 이내로 제한.
(다만, 채무독촉이 아닌 단순안내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을 화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미>
- ◆불합리하고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빈도로 전화하는 행위<미>

〈 협회 권고 기준 〉

- ◆채권별 유효통화 연결 기준 : 실제 채무자와 대화가 이루어진 실효 통화 기준
- ◆채무내역 안내 등 단순히 채무내역을 안내하기 위한 SMS 등 제외

④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9Ⅳ)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이란 채권자, 원금 채무액,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여부 등 채무자의 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관 련 사 례 〉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 ◆연체기간을 늘려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마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⑤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채권추심법」 §9Ⅴ)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 관련 사례 〉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일>
- ◆속칭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현금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일>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일>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9vi)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 관련 사례 〉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호·일>
 -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을 강요하는 행위<호>
- ◆기존에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⑦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1 i)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관련 사례〉

-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이 아닌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영·호)
-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를 전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하는 행위(호)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⑧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1 ii)

☞ 위반시 제재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관련 사례〉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미·영)
 -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될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될 표지를 하여 보내는 행위

⑨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1 iii)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일부 영업정지 가능

* ()내는 과태료 대상자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하 같음)

〈 관 련 사 례 〉

- ◆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 채권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위
- ◆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⑩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1 iv)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일부 영업정지 가능

〈 관 련 사 례 〉

-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미·호>
- ◆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한 상태이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행위
- ◆ 법원에 접수하지도 않은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행위<영·호>
-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미·호>
- ◆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에 압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가장하는 행위<미·영·호>
-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호>
- ◆ 계약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채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가장하는 행위<호>
- ◆ 채무 미변제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호>

⑪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1 v)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일부 영업정지 가능

〈 관 련 사 례 〉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⑫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2 i)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2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3회 위반 1,400만원(700만원), 일부 영업정지, 등록취소 가능

〈 관 련 사 례 〉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영·호)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실한 데도 방문하는 행위(영)
-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악용해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호)
- ◆ 통상적이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미)
-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喪中임을 알면서도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⑬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2 ii)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2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500만원), 일부 업무정지, 등록취소 가능

〈 관련 사례 〉

- ◆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대부업체 소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 ◆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대부업체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해서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호>

⑭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2 iii)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100만원(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3회 위반 400만원(200만원), 일부 영업정지, 등록취소 가능

〈 관련 사례 〉

- ◆ 수신자 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정보료 등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미>
- ◆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줘야만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⑮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2 iv)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100만원(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3회 위반 400만원(200만원), 일부 업무정지 가능

〈 관련 사례 〉

-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인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⑩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12v)

☞ 위반시 제재내용 : 1회 위반 100만원(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3회 위반 400만원(200만원), 일부 업무정지 가능

〈 관 련 사 례 〉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미>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미·영·호·일>
- ◆우편물 겹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미·영>
 - *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등의 용어를 우편물 겹봉에 표기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영>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 협회 권고 기준 〉

- ◆제3자가 채무사실을 모르는 경우
 - 채권자 성명·명칭과 추심자 성명·명칭 및 연락처 고지
-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 대위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 절차 안내 가능

3.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민원 처리)

- 대부업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추심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대부업자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붙임 2]

준 법 서 약 서

_____ 귀중

본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규준·지침·윤리강령 등 제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채권매각통지서 표준안

구 분	사전통지	사후통지
적용대상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	모든 대출채권
통지시기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 － 사전통지서 1회 이상 발송	매각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 － 사후통지서 1회 이상 발송
통지내용	① 총 상환의무액 －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②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 소멸시효 완성여부 : ☐ 여 / ☐ 부	① 총 상환의무액 －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② 채권 매입 기관 － 이름, 주소 등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 소멸시효 완성여부 : ☐ 여 / ☐ 부
통지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SMS 중 선택 가능 * 발송내역 관리 필요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내용증명우편

[붙임 4]

변제 독촉장 표준안(예시)

- 추심직원 등이 변제독촉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법적절차 진행 중’, ‘형사고소 예고통지’ 등)는 사용금지

채무상환 촉구 및 연체금 납부 최고서

■ 채 무 자 : 홍길동 님

■ 관리기관 또는 채권자 : ○○대부(주)

당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귀하는 당사의 연체자로서, 그동안 당사에서 귀하께 수 차례 전화 및 우편 등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자인 당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거나 귀하의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 회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의 채무가 완제되는 시점까지 당사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사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조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입금전용계좌 (예금주: ○○대부(주))	채무원금	이자 및 기타비용
		원	

◆ 담 당 자 : ○ ○ ○

◆ 직통전화 : 00) 000 - 0000

◆ 납부기한 : 0000년 00월 00일

◆ 납부방법 : ①○○대부(주)입금전용계좌 ②기타변제방법기재

○ ○ 대부(주)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변제독촉장 송부, 방문추심, 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 등)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시 추심중단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이 당사 홈페이지(www.0000.c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0000-0000)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예시)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채무 미변제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도 압류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무 미변제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붙임 6]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000-000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00-000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대응방법】

- ①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 ②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대응방법】

- ①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 ②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구청·경찰서에 신고**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눈물그만'(economy.seoul.go.kr/ tearstop))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을 하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시민 유의사항(붙임4)'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을 직접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변호사를'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부업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신청

【대응방법】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자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해온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

4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 ①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
- ②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5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대응방법】

- ①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 *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 ②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6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촉탁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대응방법】

- ①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 ②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7 채권자 또는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시 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대응방법】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 ▶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대부업자 주소지 관할 구청(또는 시청) 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채무자 유의사항

1.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 ①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②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재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

-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2.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①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③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

○ 만약,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 부명령)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①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③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자 등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 무가 생깁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 할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눈물 그만'(economy.seoul.go.kr/ tearstop)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8.10.)

양벌규정 · 손해배상책임





제1장 양벌규정

1. 의의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관련 법령에서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처벌이 있으므로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2. 관련 법률

-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목록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장 개별법률(양벌규정)

1. 채권추심법

가. 양벌규정(제16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칙 조항(제15조)

(1) 5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2) 3천만원 이하 벌금

-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채권추심법」 제8조 의4)
- ② 다음 각 호의 폭행·협박 행위를 한 자(「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7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③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 ④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3)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는 행위를 한 자(「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

- ②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 글 · 음향 · 영상 ·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2. 신용정보법

가. 양벌규정(제51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칙 조항(제50조)

(1)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신용정보법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
-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신용정보법 제17조제6항)

-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신용정보법 제17조의2제1항)
-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신용정보법 제25조제1항)
-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신용정보법 제27조의2)
-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2항)
- 제33조를 위반한 자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신용정보법 제40조의2제6항)
-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신용정보법 제42조제4항)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신용정보법 제14조제2항)
-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신용정보법 제22조의7제1항제1호)
-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신용정보법 제22조의7제1항제2호)
-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신용정보법 제22조의7제1항제3호)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신용정보법 제22조의7제1항제4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신용정보법 제25조제6항)
-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낸 자(신용정보법 제40조제1항제4호)
-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신용정보법 제40제1항제5호)
-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에게 채권추심업을 하게 한 자(신용정보법 제41조제1항)
-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신용정보법 제41조의2제1항)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래 각 호의 경우가 아님에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한 자(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1. 신용정보의 가공 · 분석을 위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

1. 개인정보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 가. 수집·이용한 날짜
- 나. 수집·이용한 정보의 항목
- 다.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정보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 가. 폐기한 날짜
-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
-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신용정보법 제27조제4항)
-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신용정보법 제27조제5항)
-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신용정보법 제27조제7항)

3. 개인정보보호법

가. 양벌규정(제74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칙 조항(제70~73조)

(1)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2)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호~2호)
-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28조의2)
-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제1항)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1항)

법 제39조의3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3호)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1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4)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제1항)
-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2항)
-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

4. 대부업법

가. 양벌규정(제2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칙 조항(제19조)

(1) 5천만원 이하 벌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대부업법」 제3조, 제3의 2)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또한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대부업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2)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대부업법」 제7조제3항)
-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

제3장 손해배상책임

1. 의의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있다.
- 관련 법령에서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적극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와 달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통해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 관련 법령 목록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 손해입증책임

법령	상대방(보호대상)	배상 요건	손해입증책임
채권추심법	채무자 · 관계인	고의 · 과실	채권추심자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회사등
개인신용정보법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대부업법	거래상대방		대부업자등

제4장 개별법률(손해배상책임)

1. 채권추심법 (손해배상의 책임)제14조

-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가~라목<개정 2011.3.29., 2014.5.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용정보법

가. 손해배상의 책임(제43조)

(1) 제43조 제1항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3조 제2항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
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
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제43조 제3항

-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개인신용
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4) 제43조 제4항

-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 제5항

-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제43조 제6항

-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제43조 제7항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43조의2)

(1) 제43조의2 제1항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제43조의2 제2항

-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손해배상의 보장(제43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가. 손해배상책임(제39조)****(1) 제39조 제1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제39조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9조 제4항

-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39조의2)

(1) 제39조의2 제1항

-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제39조의2 제2항

-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39조의2 제3항

-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4. 대부업법

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제11조의4)

(1) 제11조의4 제1항

-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1조4 제2항

-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금융위등록 : 5천만원
시·도등록 : 1천만원

민원상담사례



1.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 · 위계 ·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사례 1-1 경기도에 거주하는 하모씨는 대부업체 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하는 담당직원이 직장내 오전 11시경에 찾아와 차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대포차량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본인 차량을 폐차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폐차료 40만원을 담당직원이 받아서 돌아감.

사례 1-2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개인 대부업자에게 4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빌렸음. 선이자 10%를 떼고 실수령액은 총 2,300원이었고 매달 10%의 선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그동안 이자와 원금 일부로 총 2,9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매일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음. 먹살을 잡기도 하고, 집으로 2~3명씩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잘라 내놓으라거나 산에 물어버리겠다는 폭언을 하고 감. 그때마다 각서를 써주며 상환약속을 하며 버텼으나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추심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임.

법률내용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법 제9조 제1호)
유의사항	•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감금 –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하고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전부)정지 및 등록취소

2.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사례 2-1 경북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C대부업체에서 250만원을 대출받아 변제 하던 중,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대출 이자를 정해진 약정일에 변제하지 못했음. 대출금의 이자를 약정일에 상환하지 못하자,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아침에 휴대폰을 켜는 순간 전화벨은 계속 울려대고 1시간만 지나면 전원이 꺼질 정도임. 어느 날 담당 추심직원은 채무자 최모씨에게 전화로 “x끼, xx새끼.....”를 섞어가며 나이를 쳐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전화 독촉을 한 사례임

사례 2-2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곽모씨는 남편이 본인 몰래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현재 5년째 별거중인 상태에서 계속 남편의 소재문의 전화를 받고 있음. 수차례 담당직원이 집을 방문하고 자택 및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지만 자세하게 별거증임을 설명하니 담당직원이 “그럼 1주일 안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라고 얘기함. 그리고 자택 방문하여 문을 크게 두드리면서 이웃 사람이 다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동거인으로 같이 대출받아서 썼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거냐?”는 등의 발언을 하고 귀가하였음. 이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아들을 시켜서 채무자인 남편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아빠한테 전화해봐라”라고 시키는 등 과도한 불법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너무 불안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강하게 민원제기를 한 사례임.

사례 2-3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몇 년전 대부업체에서 250만원을 대출받아 그동안 연체 없이 매달 원리금 11만원씩 변제해왔음. 보증인이 입보된 계약이라 최대한 연체 없이 거래해왔으나 매달 변제일 5일전부터 문자를 보내고 2일전부터 돈을 입금하는 당일에 입금할 때까지 전화를 하였음. 박모씨의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수업을 하러 돌아다니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변제일 당일 오후 2시까지 입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후 2시 15분경 버스로 이동 전화를 하여 내려서 전화를 받음. 전화를 받자 “왜 돈을 안 보내냐? 언제 보내냐? 아까 은행이라더니 왜 입금안하냐?”라고 하여 채무자가 짜증을 내자 “이 아줌마가 어디다가 지금 성질을 내냐?”며 욕박지르면서 4시 마감 때까지 안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이 돈 보내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전화하여 받아내겠다고 협박을 하였음. 변제일 당일에 1시간 늦었다고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을 하니 너무 무서워서 일단 은행을 찾아 입금을 하였으나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추심이 아니냐며 민원제기를 한 사례임.

사례 2-4 경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L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해오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상태가 되었음. 돈이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음에도 L대부업체에서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촉을 하기 위하여 추심전화를 하루에 20여통씩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임. 실제로 통화가 된 것은 2~3회 정도이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전화를 걸어와 업체에 부담함을 호소하였으나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않았고 통화가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사무실의 다른 직원과 통화하였다며 정당한 추심이라고 함. 잦은 전화로 휴대폰 배터리가 닳을 정도인데 정상적인 추심행위인지 의문스럽다며 민원제기를 한 사례임.

사례 2-5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음식점을 운영해오며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였으나 은행이나 기타 캐피탈 등에서 대출이 모두 거절되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해오다, 최근 구제역등의 악제가 발생하여 매출이 절반이상 줄어들어 연체가 발생함. 잦은 전화 연락을 일일이 받으며 장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 연락을 피하게 되었음. 연락을 받지 않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전화하여 OO대부업체임을 밝히며 이모씨를 찾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반복적인 전화 추심을 하는 것이 불법 추심이 아닌지 문의한 사례임.

법률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법 제9조 제3호)
유의사항	• “야간”이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 대법원 판례(2004도 8447)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48일간 460여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소재문의를 하는 경우 직접적인 소재, 연락처,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하는 등 소재파악이 근본목적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관계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자택 방문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함.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전부정지 및 등록취소

3. 채무확인서의 교부

사례 3-1 경북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S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의 채무 확인을 위하여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최모씨에게 발급 비용으로 45만원을 요구 함.

사례 3-2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곽모씨는 남편이 본인 몰래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S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의 잔존 채무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담당직원은 연체이자도 없으며 이자납부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해당월에 납부해야하는 이자 15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발급해주겠다고 함.

사례 3-3 충북에 거주하는 여모씨는 거리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를 보고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였고 이후 연체를 하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현금으로 주었던 이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계약관계 서류의 교부와 거래내역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서류발급을 거부함.

사례 3-4 충서울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다중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G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H대부업체에서 차일피일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회피함. 이의를 제기하자 발급비용으로 5만원을 요구하여 다른 대부업체에서는 발급비용으로 1만원 또는 전혀 받지 않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문의를 한 사례임.

법률내용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5조)
유의사항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등 발급시의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실비(발급비용 및 우편 송달료 등 통상 1만원 이내 예상)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의 증명서 발급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해석)
처벌사항	과태료 2천만원 이하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례 4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8년 12월경에 지인 김모씨의 부탁으로 보증서를 주었음. 대부업체에 보증인으로 입보된 후 얼마 있다가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오면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니 보증인으로 입보되어있는 이모씨가 대출금을 변제 하라”고 강요했으며, 미변제 시에는 재산을 강제집행한다고 했음. 보증인은 채무자 김모씨에게 대출금 변제유무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법률내용	채무자 외의 사람(법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 제9조, 4호)
유의사항	-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 이란 채권자, 원금채무액,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여부 등 채무자의 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 → 거짓 사실인지 여부는 채무내용의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처벌사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사례 4 광주시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으로 우편물을 받았음. 우편물 내용은, “재산관계 명시 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이었다. 법원에 동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법원에서는 권모씨에 대한 법적 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임.

법률내용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 제11조, 4호)
유의사항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강제집행신청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처벌사항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일부)정지

6. 불공정한 행위의 채권추심 금지

사례 6-1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어 장례준비 관계로 이자를 약정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자, 장례식장에 추심직원이 찾아와서 부조금으로 이자를 대신 납부하라고 강요를 받은 사례임.

사례 6-2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현재 임신중독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한 상태의 임산부이며 약 2년전 가정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인 다중채무자임. 잘 갚아가던 중 입원으로 인해 대출금의 상환이 되지 않자 여러 대부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추심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음. 한 달 정도 연체되자 몸이 다 나으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입금을 강요하며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며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를 한 사례임.

사례 6-3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아니나 지인인 채무자 박모씨가 2001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는 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된 상황임을 알게 되었음. 최근 지인 박모씨가 심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고 대체적으로 불안장애 및 상세불명 뇌경색에 준하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중이고 정확한 진단명은 진단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음. 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해당 대부업체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채무변제에 있어서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사유가 아니라며 계속해서 추심을 하고 있어 추심이 중지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문의를 한 사례임.

법률내용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 제12조, 1호)
유의사항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처벌사항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일부)정지

사례 6-4 서울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자납입이 지연되고 있었음. 해당 업체에서는 채무자인 송모씨에게는 단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보증인 아닌 송모씨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남편의 휴대폰으로 이자납입계좌번호와 금액을 발송했다고 함. 송모씨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아님에도 소재문의를 하고 남편이 채무관련 문의를 해도 알려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자세한 사항을 발송한 것은 명백히 제3자 채무사실고지라며 강한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례임.

사례 6-5 부산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모친이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음. 최근에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3곳의 대부업체에서 모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음. 대부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정모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모친의 행방을 물었고 대부업체인 것을 직감하여 모친의 병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음. 정모씨는 자식 된 입장에서 모른 채할 수도 없어 일단 대출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대출금을 상환하던지 할텐데 대부업체에서는 자세한 사항은 법률위반이라며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였음. 계속 두자니 이자가 계속 늘어날테고 이자를 더 받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출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임.

사례 6-6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A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현재 연체중인 상태임. 전화가 와서 받아 몇일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해도 으박지르며 돈을 변제하라고만 하는 등 막무가내라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 이후 1~2일 전화를 받지않자 A대부업체에서는 주말에 방문을 하여 부친을 만났음. 상식적으로 젊은 남자가 찾아와 딸을 찾는데 물어보지 않을 아버지는 없을 것이라며 먼저 부친이 물어봐서 대답을 했다고 하지만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임.

법률내용	•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법 제12조, 5호)
유의사항	• 벽보부착,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고지하는 행위 • 보증인 아닌 제3자가 대출 관계를 유추하여 관련 사항을 문의해도 “제3자 고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인에게 문의 하십시오”라고 응대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내용을 “가족분이므로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라며 채무사실고지 및 대위변제 요구를 하는 행위

유의사항	→ 가족이 대위변제 의사가 있다면 관리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당 대부업체의 영업소 등록 소재지 시, 도청에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 요청
처벌사항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영업(일부)정지

7.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례 7-1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2010년경에 동생이 생활정보지를 보고 근처 소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대출을 받아 한 2년정도는 상환을 하다가 빚에 못 이겨 현재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보증인도 아닌 언니인 민원인의 근무자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묻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였음. 하루는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민원인의 정상적인 사생활이 어려운 상황임. 본인이 갚아야 할 의무도 없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화도 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사정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가족이니 책임지라며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임.

사례 7-2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작년 생활정보지의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았음. 실제 계약서상 채무금액은 400만원이었으나 실제 민원인이 받은 금액은 300만원이었음. 단기간에 급하게 필요하여 한 달 이자가 100만원이라고 하여 과도한 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하였고 2개월간 이자 100만원씩 상환 후 3개월째에 채권자와 합의하에 원금 300만원과 이자를 불입하고 채무관계를 종결하였음. 그러나 최근에 갑자기 채권자가 그동안 밀린 이자를 상환하라며 독촉전화를 하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민원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이미 완제가 끝난 채무를 부모님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라며 강하게 민원 제기를 한 사례임.

법률내용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제9조, 6호)
유의사항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유의사항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을 강요하는 행위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전부정지 및 등록취소

8.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례 8 충남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2년 4월 4일 A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21일에 이자를 상환해오고 있었음. 그동안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해 오던 중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되어 연체를 하게 되었음. 연체를 한 날부터 하루 이틀 입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자 더 이상 면목이 없어 업체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음.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 하였으나 추심직원은 계속해서 연체이자를 납입하라고만 하여 전화를 회피하고 싶은 심정뿐이던 상황에서 A대부업체에서 주소지인 예전 사무실로 방문하여 직장동료에게 민원인의 행방을 묻고, 모친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추심행위를 하였음. 민원인이 A대부업체 추심직원이 상호를 밝히는 행위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한 사례임.

법률내용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8조의3)
유의사항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3호) • 원칙적으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은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계인에 대해 연락 가능한 사유: ① 채무자의 소재, ② 채무자의 연락처, ③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처벌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백만원 이하

9.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사례 9-1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2년 전 동생이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어 대부업체 몇 곳에서 대출을 받았음. 잘 상환해오다 근무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나 A대부업체에서는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함. 민원인이 추심직원에게 사건번호를 불러주고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추심행위를 멈추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사례임.

사례 9-2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하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을 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개인회생중임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알리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변제요구를 중단하였으나 일부 대부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전화로 독촉하여 개인회생중임을 알렸음에도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사례임.

법률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법 제12조, 3의2호)
유의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추심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야 함
처벌사항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부록

1. 개별조항 비교

2. 최근 개정 대부업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전문



개별조항 비교

1. 양벌규정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21.]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50조(벌칙) ① 제4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2. 4.>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삭제 <2020. 2. 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 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1의 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 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 한 자		른 중개수수료를 초과 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 른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 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 3항, 제25조제6항, 제28조 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당한 자 1의2. 제21조제1항(제3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공자등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5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 2. 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2. 손해배상책임 규정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제11조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들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⑤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대부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③ 삭제 <2020. 2. 4.> [본조신설 2015. 3. 11.]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최근 개정 대부업법

1. [법률 제14820호] 2017.04.18. 공포

(1) 2017.10.19. 시행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10. <u>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u>	■ 변경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u>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u>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5. <u>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u> 6. <u>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5. <u>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u> 6. <u>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변경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u>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u> ■ 신설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u>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u> ■ 신설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 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u>직무정지</u>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조치의 내용을 <u>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u>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u>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u> <u>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u> <신설 2017.4.18.>	■ 변경 직무정지의 요구 ⇒ <u>직무정지</u> ■ 변경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하 도록 할 ⇒ <u>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u> ■ 신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 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 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 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 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u>금액</u> 이하	■ 변경 <u>금액의 100분의 10</u> ⇒ <u>금액</u>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u>금액</u>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u>금액</u>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u>금액</u>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u>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u> <개정 2017.4.18.>	■ 변경 <u>금액의 100분의 10 ⇒ 금액</u> ■ 변경 <u>금액의 100분의 10 ⇒ 금액</u> ■ 변경 <u>금액의 100분의 10 ⇒ 금액</u> ■ 신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u>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u>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u>	■ 변경 <u>수시로 ⇒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u> ■ 신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u>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7. 삭제 <2017.4.18.>	■ 변경 2천만원 ⇒ <u>5천만원</u> ■ 신설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변경 500만원 ⇒ <u>1천만원</u> ■ 변경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2. [법률 제14839호] 2017.07.26. 공포

(2) 2017.07.26. 시행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금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u>행정안전부장관</u>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② <u>행정안전부장관</u>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③ <u>행정안전부장관</u>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변경 행정자치부장관 ⇒ <u>행정안전부장관</u> ■ 변경 행정자치부장관 ⇒ <u>행정안전부장관</u> ■ 변경 행정자치부장관 ⇒ <u>행정안전부장관</u>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계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3.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공포

(3) 2018. 12. 24. 시행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 시행일 : 2019. 6. 25.)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를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3.3.]	■ 변경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 변경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변경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3.3][법률 제14072호(2016.3.3)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3.3]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u>제6항</u>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제5항 ⇒ <u>제6항</u>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u>제8조제4항부터 제6항</u>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제8조제3항부터 제5항 ⇒ <u>제8조제4항부터 제6항</u>

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4) 2020. 8. 5 시행

개 정 법 령	주 요 내 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u>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u>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u>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u>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현행과 같음)	■ 변경 신용등급 ⇒ <u>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u>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전문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6조(수입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1.14.]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1.14.〉	-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법 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시 행 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준법추심교육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20.8

발행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사업부

전 화 : 02)3487-5800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13층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홈페이지 : www.clfa.or.kr

※ 파본은 바뀌드립니다.